

화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3. 7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'97. 3. 7
- 다. 상 정 일 자 : '97. 3. 18 (제5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 안 자 : 기획감사실장 이 병 일
- 나. 제안사유
 - 화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신설하고자 함.
- 다. 주요내용
 - 심사위원회 의결 정족수 신설
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안 제5조 제3항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민 병 향)

- 본 조례 개정안은 화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의 심사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신설하는 개정조례로서 전남도의 시군 공통 검토지시에 따라 화순군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

4. 질의답변 요지

생 략

5. 토론요지

생 략

6. 심사결과

원안가결

첨 부 : 화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부. 끝.

화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7 - 23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3. 7

제출자 : 화순군수

1. 제안이유

- 화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신설하고 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심사위원회 의결 정족수 신설
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(안 제5조 제3항)

화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.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 (위원회 개최)</p> <p>①~② (생략)</p> <p>(신설)</p>	<p>제5조 (위원회 개최)</p> <p>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